

(報告)

성남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안

의안번호	1061
------	------

제출년월일 : 2001년 6월 28 일

발 의 자 : 권찬오 의원외10 인

1. 제안이유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구현 및 성남시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구성 및 운영(안 제2조)

- 1) 의정동우회는 성남시의회의 전직 및 현직 의원으로 한다.
- 2) 의정동우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주 사무소는 의회 소재지 내에 둔다

나. 사업(안 제3조)

- 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 2)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의정홍보
- 3) 사회복지 및 도시문제등 연구
- 4) 기타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동우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다. 보조금의 교부(안 제4조) 성남시는 의정동우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있다.

라. 운영규정(안 제5조) 의정동우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동우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성남시조례 제 호

성남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구현과 제도 및 성남시 의회의 발전 및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한 성남시의정동우회(이하 “의정동우회”라 한다)의 설치 및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운영) ①의정동우회는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전직 및 현직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의정동우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는 의회 소재지내에 둔다.

③의정동우회의 설립·육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의정동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 개선 과제 및 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2. 시정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개발과 시의정홍보
3. 사회 복지 및 도시 문제 등 연구
4. 기타 위 각호에 부대 되는 사업과 의정동우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보조금의 교부) 성남시는 의정동우회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 할 수 있다.

제5조(운영규정) 의정동우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등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의정동우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준용)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성남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